

건축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36호
(2000년 5월 22일)

◇ 개정이유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소속 건설업자 및 그 계열회사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자격시험의 과목 중 건축법규가 배치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건축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배치계획의 출제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사보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축사자격증·건축사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 재교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령

주요골자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취득자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게 되어 건축사보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써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게 함(제2조제1항).
- 나. 건축사자격증·건축사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함(제6조).
- 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특수구조물에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을 추가함(제15조제4항제3호의2).
- 라.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할 수 있는 소속 건설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건축물을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로서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는 업무시설로 정함(제15조제5항).
- 마. 건축사자격시험과목으로 추가된 배치계획의 출제범위를 대지계획·대지단면·지형계획 등으로 정하고, 건축사예비시험과목으로 추가된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를 건축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계획법 등으로 정함(별표 1).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 예비시험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중 “면허증등”을 “자격증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건축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으로, “건축사면허수첩(이하 “면허수첩”이라 한다)”을 “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면허증등의 재교부신청등)”을 “(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으로,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면허증 · 면허수첩”을 “자격증 · 자격수첩”으로,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 자격수첩 또는 건축사 예비시험합격증”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 ① 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자격증 및 자격수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사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를 각각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로 하며, 동항제7호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증재교부”를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 2만원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를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를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를 각각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로 한다.

1. 자격(면허)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건축사사무소등록신

청서등)”을 “(건축사업무신고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등록신청서”를 “건축사업무신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소속건설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 신고”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로 한다.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법 제23조 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사일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사본

2. 재직증명서

제15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제1호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정수장 · 하수종말처리장 · 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 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제15조의2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제16조의 제목중 “사무소등록부등”을 “건축사업무신고부 등”으로 하고, 동

조 본문중 “사무소등록부”를 “건축사업무신고부”로, “사무소등록증”을 “건축사업무신고필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표지중 “건축사면허수첩”을 “건축사자격수첩”으로 하고, 동서식 표지뒷면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서식 제3면 내지 제5면을 각각 제2면 내지 제4면으로 하고, 동서식 제2면(종전의 제3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사무소등록증등”을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소등록증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소속건축사신고필증”으로 한다.	별표 2 1등급 경력구분란의 제2호중 “건설업법 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건설업자”로, “주택건설사업체”를 “주택건설사업자”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체”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중 “사유(구체적으로 기입)”를 “재교부사유(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로, “정부수입인지”를 “수입인지”로 하고, 동서식 뒷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고인란중 “신고일자”를 “신고일”로, 근무처란중 “등록번호”를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처란중 “등록번호”를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조의2(처분결과통보) 도지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하거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고인란중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쪽의 자격사항란중 “등록일자”를 “등록일”로, 근무처란중 “등록번호”를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중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신고필증”을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신고필증”으로, “면허번호”를 “자격(면허)번호”로,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및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11조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설계수급대장 또는 공사감리수급대장에 기재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업무와”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건축사면허증”을 “건축사자격증”으로, “면허연월일”을 “자격취득일”로, “건설”을 “건교”로, “건축사법 제7조제1항”을 “건축사법 제7조”로, “건축사면허를 합니다.”를 “건축사자격을 부여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건설부령 제267호 건축사법시행규칙 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전형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과 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필기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계획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 건축사(史)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과 건설부령 제267호 건축사법 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제8조관련)

1. 건축사자격시험

과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배치계획	대지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실기
건축설계	평면설계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자붕설계 계단설계	

2. 건축사예비시험

과목	출제범위	출제방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건축시공	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적산	
건축계획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 건축사(史)	필기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 개정령

건설교통부령제235호

(2000년 5월 22일)

◇ 개정이유

최근의 연구결과 및 기상통계자료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및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확대·조정하고, 건축기술의 발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관한 구체적·기술적인 사항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광주광역시·강원도·전라남도·제주도 등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최근의 연구결과와 기상통계자료에 따라 수도권·광역시·경상남북도 등을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에 추가하고, 강원도 북부지역을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제외함(제6조제1항 및 별표 2).

나. 종전에는 15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 14층 이하인 아파트와 동일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15층 이상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5층 이상 14층 이하인 아파트보다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는 숙박시설·오피스텔 및 기숙사의 범위를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확대함(제6조제1항 및 별표 3).

다.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각종 하중 및 외력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7조).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력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초 · 벽 · 기둥 · 바닥판 · 지붕틀 · 토대 · 사재(斜材 : 가새 · 벼름대 · 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가로재(보 · 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 · 적재하중 · 적설하중 · 풍하중 · 토압 · 수압 · 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 “응력(應力)”이라 함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측방향력(軸方向力) · 휨모멘트 · 전단력(剪斷力) · 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
3. “허용응력도”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하중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재단면의 각 부위에 생기는 응력도가 최대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한계응력도를 말한다.
4. “구조내력”이라 함은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 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측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7. “허용응력도설계법”이라 함은 탄성 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도가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8. “극한강도설계법”이라 함은 구조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부재단면의 극한내력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극한내력의 값이 극한설계하중에 의한 부재의 응력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9. “고정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 요구조부와 이에 부착 · 고정되어 있는 비내력부분 및 각종 시설 · 설비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0. “적재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실별 · 바닥별 용도에 따라 그 속에 수용되는 사람과 적재되는 물품 등의 중량으로 인한 수직하중을 말한다.

11. “등가정적해석법(等價靜的解釋法)”이라 함은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계산하여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동적해석법(動的解釋法)”이라 함은 지진력을 구조동력학이론으로 평가하여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구조설계의 원칙)

- ①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 · 규모 · 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 · 기둥 · 보 · 바닥 · 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고정하중 · 적재하중 · 적설하중 · 풍하중 · 토압 · 수

압 · 지진하중 기타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하여야 한다.

- ② 내력부분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4조(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 ① 건축물의 내력부분에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韌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내력부분으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 · 콘크리트 ·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 ·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계산)

- ① 건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허용응력도설계법 또는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계산법에 의한다.
- ②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

의 구조계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구조해석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정할 것
2. 구조부재의 설계응력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산정된 응력의 조합 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3. 설계응력을 산정할 때에는 적재하중의 부분적인 불균등하중의 분포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것
4.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응력으로 인한 구조부재단면의 장기 및 단기의 응력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도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③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극한설계하중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에 하중계수를 곱한 극한설계하중을 사용하여 산정한 응력의 조합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할 것
 2. 내력부분의 극한설계응력은 그 부재단면의 극한내력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설계용 극한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극한강도설계법에서 사용되는 하중계수·강도저감계수 기타 구조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 지진하중은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산정할 것

제6조(구조안전의 확인)

- ①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진구역 I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②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③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적해석법에 의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높이가 7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2.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정형건축물

제7조(설계하중 및 외력) ① 건축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 및 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하중
 2. 적재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토압 및 수압
 7. 온도하중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반의 허용응력도) 지반의 허용응력도는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기초)

- ① 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자반에 직접 전달시키는 확대기초로 하되,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의 압력이 허용지내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말뚝의 내력이 그 허용지내력 이하이어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구조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하중 및 외력의 조합(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응력의 종류	하중 및 외력의 작용상태	일반지역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적설량이 1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비고
장기응력	평상시	D+L	D+L+S	-
	적설시	D+L+S	D+L+S	-
단기응력	폭풍시	D+L+W	D+L+W	기둥이 넘어져 뽑히는 등의 경우에는 L은 당해 건축물의 실제상황에 따라 적재하중을 뺀 값으로 한다.
			D+L+S+W	
	지진시	D+L+E	D+L+S+E	
		D+E	D+E	

※ 비고 : 위 표에서 D는 자중에 의한 응력, L은 적재하중에 의한 응력, S는 적설하중에 의한 응력, W는 풍하중에 의한 응력, E는 지진하중에 의한 응력을 말한다.

[별표 2] 지진구역(제6조제1항관련)

지진구역	해당지역
I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남부(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양양시, 낙동군, 순천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상남도
II	강원도 북부(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전라남도 남서부(목포시,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제주도

[별표 3] 중요도(제6조제1항관련)

중요도	특	1	2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병원, 방송국, 전신전화국, 소방서, 발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5층 이상인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및 아파트 	중요도 특 및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별표 4] 지반의 허용응력도(제8조관련)(단위 : kg/cm²)

지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단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경암반	화강암 · 석록암 · 편마암 · 안산암 등의 화성암 및 굳은 역암 등의 암반	400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 각각의 값의 1.5배로 한다.	
연암반	판암 · 편암 등의 수성암의 암반	200		
	혈암 · 토반반 등의 암반	100		
자갈				
자갈과 모래와의 혼합물				
모래섞인 점토 또는 롬토				
모래 또는 점토				